

미국 농약기준치 관련제도

요 약

- 미국내 잔류농약기준관련 기관
 - EPA, FDA, USDA 및 주 정부(state government)
- 식품의 원재료인 농작물(crop)에 사용되기 전 농약은 US EPA에 의해 사용 가능여부가 결정
 - 위험 평가(Risk assessment) : EPA는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해가되지 않는지를 알아봐야 함
 - 그 후 농약 잔류기준치를 결정
- FDA는 신선 농작물 및 가공식품의 잔류농약을 모니터하고 기준치를 적용
- USDA는 육류, 가금육류, 계란류의 기준치를 모니터 하고 기준치 적용
- 연방정부 외에 주 정부에서도 잔류농약관련
- 수출만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 및 기준은 없음

I. 잔류농약관련 정책 및 담당기관

☐ 연방법에 의해 EPA가 잔류농약 사용여부 판단 및 기준치 책정. FDA 및 USDA가 농작물, 식품, 육류 등의 잔류농약관련 기준을 집행 및 모니터하여 데이터 보고

☐ EPA 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)

- EPA는 FIFRA (Federal Insecticide, Fungicide, and Rodenticide Act)와 FQPA (Food Quality Protection Act)에 의해 농약관련 규제 권한을 부여받음
- 농약프로그램부서(Office of Pesticide Programs)에서 농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를 관장
- FQPA법에 의해 EPA는 특정 농약이 등록되기 전, 해로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봐야 함
 - 과학적인 데이터를 검토하여 농약의 해로움에 대한 여부를 결정
- FIFRA법에 의해 EPA가 미국에서 어떤 농약이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.
 - 미국에서 취급하는 미국 제조 혹은 수입된 모든 농약은 등록되어야 함

- FFDCA(Federal Food, Drug, and Cosmetic Act)에 의해 식품 내의 농약 잔류기준치를 설정하도록 되어있음. 잔류기준치는 사람음식 및 동물 사료에 있을 수 있는 최대치를 나타냄
- EPA와 다른 연방기관 및 주 정부기관은 함께 새로운 농약 및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사용에 대해 평가

□ FDA

- EPA에 의해 지정된 기준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진행
 - EPA와 함께 잔류농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
- 잔류농약이 있는 식품은 FFDCA(Federal Food, Drug, and Cosmetic Act)법에 의해 집행됨
- 농약 모니터 프로그램(Pesticide Monitoring Program : PMP)
 - 위험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식품의 잔류 농약과 관련된 리포트
 - FDA 연구실에서 규제를 위반한 잔류농약에 대한 테스트 진행

□ USDA

- EPA에 의해 지정된 기준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육류 및 유제품관련하여 모니터링 진행
- 농약 데이터 프로그램(Pesticide Data Program : PDP)
 - 전국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농약잔류 데이터베이스를 만듦
 - 미국 식품 공급 중 농작물에 있는 잔류농약의 샘플, 테스트 및 보고를 관장
 - EPA, FDA 및 다른 정부기관에도 데이터를 제공하여 잔류농약관련 결정에 기여
- 미국 유기농 프로그램(National Organic Program) 운영
 - 유기농 관련 농약에 대한 부분은 USDA관할

□ 주 정부 (State government)

- 미국은 각 주 정부가 농약관련한 규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
- 주 정부는 EPA의 연방 농약규정보다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으며 이는 각 주 마다 규제가 모두 다름
- EPA의 농약규정을 주 단위로 집행하기도 하고 있을 수 있는 관련 불편 사항에 답하기도 함

II. 잔류농약 검사관련

- ☐ EPA의 경우 두 개의 농약관련 연구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검사방법, 잔류농약기준치 등을 결정

※ 업체들이 사용하는 검사기관이 아님

- ☐ EPA, FDA 및 주 정부 등에서 잔류농약 검사관련된 방법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민간 검사기관에서 업체들의 잔류농약관련된 검사를 진행

- 업체에서 직접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잔류농약 점검을 진행

- ☐ EPA의 GLP (Good Laboratory Practice)

- 올바른 연구실 실행 규제 모니터 프로그램 (Good Laboratory Practice Standards)을 통해 EPA에 제출된 잔류농약관련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진행
- EPA는 GLP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규제이행 및 EPA측에 전해진 연구결과가 농약규제에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점검
- GLP 점검자는 FIFRA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진행과정에 불법적인 것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증거서류 및 직접적인 샘플을 채취함

- ☐ USDA AMS (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)

- 수출 실험실 승인 프로그램 (Export Laboratory Approval Program)을 통해 수출되는 미국산 육류 및 가금육류에 대한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함
- 해외 정부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테스트 및 인증을 요구할 시에 LAS (Laboratory Approval Service)는 FSIS(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)와 협력하여 허가된 연구실에서 필요한 검증이 이루어졌음을 인증함.

III. 수출관련

- ☐ 미국은 식품의 수출 농작물관련한 잔류농약은 대부분 수출업체 혹은 미국 내 생산업체의 몫임

-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잔류농약 검사는 없으며 미국산 식품이 수출되는 해당국가의 잔류농약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업체가 진행

- 정부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정부에서 미국측에 잔류농약관련한 인증을 요구할 시에 정부차원적인 인증제도를 실시함

□ USDA의 MRL(Maximum Residue Limits) 데이터베이스 운영(외부업체 운영)을 통해 미국 내 EPA의 잔류농약기준 및 주요 수출국의 곡물, 육류, 유제품 등 USDA소관 식품들에 대한 해외 잔류농약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.

- 해외 국가에서 미국에 특정한 잔류농약기준에 대한 요구를 할 시에만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제공

□ USDA AMS (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)

- 수출 인증 및 검증 프로그램 운영
 - 해외에서 미국에 식품 및 농작물관련 농약잔류기준 및 그 외의 기준에 대한 인증을 요구할 시에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함
- USDA관할인 육류, 가금육류, 유제품 등과 관련된 인증프로그램

IV. 시사점

- 미국의 잔류농약기준치는 환경부쪽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관련하여 USDA와 FDA가 모니터링을 진행함
- 수입식품 및 국내재배식품 모두 같은 규제에 속하며 때에따라 주정부의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어, 주 정부의 기준도 알아보아야 함
- 만일 FDA측에서 수입된 식품이 EPA가 기준치를 지정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것을 찾거나 기준치보다 많다고 여겨질 경우 억류되고 추후에 같은 업체에서 보내는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억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약 기준치를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

출처 : EPA, FDA, USDA 등